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63
------	-----

2023. 7. 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7.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차지방일괄이양 등에 따라 마약류취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 위임규정 삭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치구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위임조항과 사무명에 반영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관 부서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됨.

나. 자치구 위임사무 삭제

- 정부는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13개 부처, 261개 사무를 담고 있는 36개 법률(6개 개별법안, 6개 일괄법안)을 2022년 1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2차 지방일괄이양을 본격 추진함.
-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이 개정(2022.6.10.)되면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폐업 등의 신고수리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어(법 제6조 등) 마약류 관리사무의 위임규정을 삭제함.
- 또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마약류관리법이 개정(2015.5.18.)되면서 보고 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마약류의 도·소매 판매 보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사무가 삭제된 사항을 반영함.

- 다만, 2015년 법 개정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에서 제외된 사무를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것은 법령과 조례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님.
- 현재 마약류에 대한 서울시장의 권한은 출입·검사와 수거(법 제41조), 업무보고 명령(법 제43조), 마약류 취급자 교육(법 제50조 등),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69조)만 남게 되지만,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구청장에게 위임하게 되므로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은 없음.

<삭제 (하위)사무명 >

사 무 명	개정사유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제2차지방일괄이양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개정 (개정일: '22.6.10.) (시행일: '23.6.11.)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개정 ('15.5.18.)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다. 위임조항 및 사무명 변경

(1) 위임조항 변경

-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임조항과 사무명을 변경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함.
 -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의 사무와 자동차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허가 취소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무는 관계 법령과 부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3급이상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5급이하 연구관·지도관 등의 기관 내 전보 등의 임용권 위임 근거 규정을 반영함.
- 다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은 개정 이후 1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후속 입법 조치에 미흡해 불필요한 입법 공백과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게 됐으므로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개정사항이 신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위임조항 변경>

주관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개정 사유
		현행	개정	
버스 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08.11.6 / '11.4.11.)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5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	
택시 정책과	<2번 사무의 '사'목>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 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	자동차등록령 개정 ('21.11.16.)
인사과	<3~4번 사무>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이하 일반직 (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규정 개정 ('20.9.22.)
물재생 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30조	하수도법 제26조	하수도법 개정 ('22.1.5.)
소방 재난본 부 (예방 과)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제34조, 제44조 소방시설법 제35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제35조, 제49조 소방시설법 제36조	소방시설법 개정 ('21.12.28.)

(2) 사무명 변경

- 「하수도법」, 「아동복지법」, 「의료법」의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종전 「의료법」에서는 요양병원에 ‘정신병원’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각각 구분해 정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임사무의 내용은 동일함.

<사무명 변경>

주관 부서	사 무 명		개정 사유
	현행	개정	
물재생 시설과	1. <u>허가의 취소 등</u>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 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1. <u>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u>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 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개정 (’22.1.5.)
아동 담당관	1. <u>요보호아동</u> 보호조치	1. <u>보호대상아동</u> 의 보호조치	0동복지법 개정 (’11.8.4.)
보건 의료 정책과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 및 <u>요양병원</u> (이하 " 병원 등")의 개설허가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 <u>요양병원</u> 또는 <u>정신병원</u> (이하 "병원 등")의 개설허가	의료법 개정 (’20.3.4.)

라. 주관부서 변경

-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과 부서 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창의행정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이

‘창의행정담당관’ 으로 개편(2023. 1. 9)되면서 서울시립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업무의 주관부서가 변경됨.

- 물순환안전국의 치수안전과 내 ‘수질관리팀’ 을 ‘물재생시설과’ 로 이관하면서 수질보전과 광역 상수원 관리 등 관련 조항의 주관부서도 변경됨(2023. 3. 10).
- 2015년 민선6기 2차 조직개편 시 ‘체육정책과’ 는 체육정책기능, ‘체육진흥과’ 는 여가정책으로 업무분장되면서, 체육시설업에 관한 일부 사무가 체육정책과로 이관됨.

<주관부서 변경>

사무명	주관부서	
	현행	개정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시정연구담당관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기획조정실)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치수안전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순환안전국)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체육진흥과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관광체육국)

- 그러나, 2015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 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3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2차지방일괄이양 등에 따라 마약류취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 위임규정 삭제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3.4.13.~5.3.)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강희주 (☎2133-674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동담당관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아동복지법」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아동복지법」제56조	구청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나. 정기 검사증인 표시 다. 부정계량기의 처리 라. 과징금 마. 지위승계 바. 청 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 제6항 ○ 「계량에 관한 법률」제34조 ○ 「계량에 관한 법률」제52조 ○ 「계량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제4항 ○ 「계량에 관한 법률」제63조제2항 ○ 「계량에 관한 법률」제66조 ○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구청장
	2.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생활용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나. 생활용품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	구청장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4.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p> <p>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p> <p>다. 검사 등</p> <p>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p> <p>마. 실태조사 등</p> <p>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p> <p>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p> <p>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p> <p>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p> <p>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p> <p>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p> <p>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6.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p> <p>가. 설립신고</p>	<p>은 법 시행규칙 제46조</p> <p>○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p> <p>○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목까지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p> <p>○ 대부업법 제3조의 3, 제5조</p> <p>○ 대부업법 제12조</p> <p>○ 대부업법 제13조</p> <p>○ 대부업법 제16조</p> <p>○ 대부업법 제17조</p> <p>○ 대부업법 제21조</p> <p>○ 대부업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p>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p>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p>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3항</p>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p> <p>○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정관변경 신고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해산신고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확인증 발급	○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57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119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8조	
농수산유통담당관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창의행정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총장

□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전략산업기반과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서울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제외)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 다. 개발토지의 분양·임대업무 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라목까지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 산업집적법 제33조 ○ 산업집적법 제36조 ○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	구청장

□ 복지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마. 감사의 추천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6항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7항 ○「사회복지사업법」제24조 ○「관세법」제91조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제40조 제3항	구청장 구청장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도시철도법」제9조	구청장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 ○ 여객자동차법 제9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p> <p>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1. 차량의 연장 (차량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p> <p>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p> <p>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목,나목, 제15호가목,나목, 제16호나목, 제26호라목, 마목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p> <p>15.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p> <p>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p>	<p>○ 여객자동차법 제19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1조</p> <p>○ 여객자동차법 제23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3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4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4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16조</p> <p>○「여객자동차법」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94조</p>	<p>구청장</p>
택시정책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p> <p>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p> <p>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p> <p>2.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p> <p>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p> <p>다. 등록의 거부</p> <p>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p> <p>마. 변경등록의 처리</p> <p>바. 이전등록의 처리</p> <p>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p> <p>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p> <p>자.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p> <p>차. 압류등록의 처리</p> <p>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p> <p>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p>	<p>○「자동차관리법」제7조</p> <p>○「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8조 제2항, 「자동차 등록규칙」제4조 제2항</p> <p>○「자동차관리법」제9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제6항</p> <p>○「자동차관리법」제10조</p> <p>○「자동차관리법」제11조</p> <p>○「자동차관리법」제12조</p> <p>○「자동차관리법」제13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p> <p>○「자동차관리법」제13조제6항</p> <p>○「자동차관리법」제13조제8항</p> <p>○「자동차관리법」제14조</p> <p>○「자동차관리법」제16조</p> <p>○「자동차관리법」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2항·제4항</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28조	
	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9조	구청장
	4.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구청장
	5.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구청장
	6.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구청장
	7.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33호	구청장
	8. 청문(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	구청장
	9.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10. 자동차 검사 기간의 조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구청장
	11.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구청장
	1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구청장
	가. 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28조	
	나. 등록의 취소 등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35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법 제31조	
	마. 사업개선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33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여객자동차법 제32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법인의 합병인가 아. 양도·양수의 신고 자. 상속의 신고 차. 청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휴업·폐업의 신고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제35조 ○ 여객자동차법 제86조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 여객자동차법 16조제2항, 제35조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	구청장
물류정책과	1.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용신고 나. 임대허가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4.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같은 법 제5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	○ 「도로법」제55조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녹색에너지과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10호까지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 석유사업법 제11조 ○ 석유사업법 제12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p> <p>마. 과징금 부과·징수</p> <p>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p> <p>사. 보고 및 검사</p> <p>아. 청 문</p> <p>자. 과태료 부과·징수</p> <p>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 및 변경등록</p> <p>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p> <p>다. 과징금 부과·징수</p> <p>라. 보고 및 검사</p> <p>마. 청 문</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p>4.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p> <p>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p> <p>(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p> <p>(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p> <p>5.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p> <p>6.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신고 및 변경신고</p>	<p>○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p> <p>○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p> <p>○ 석유사업법 제30조</p> <p>○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p> <p>○ 석유사업법 제40조</p> <p>○ 석유사업법 제49조 제3항</p> <p>○ 석유사업법 제33조</p> <p>○ 석유사업법 제34조</p> <p>○ 석유사업법 제35조제1항</p> <p>○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p> <p>○ 석유사업법 제40조</p> <p>○ 석유사업법 제49조</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 제38조</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제4항</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6조제1항</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9호, 제9의4호 및 제5항</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12호, 제5항</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5조</p> <p>○ 「전기사업법」 제71조</p>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 제2항</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나. 신고필증 발급</p> <p>다. 취소</p> <p>7.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p> <p>나. 과태료의 부과·징수</p> <p>8.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시정명령 등</p> <p>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p> <p>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p> <p>라. 과태료의 부과·징수</p> <p>9.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p> <p>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p> <p>나. 보고·검사 또는 질문</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3항</p>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6</p> <p>○ 「전기사업법」 제71조</p> <p>○ 「전기사업법」 제108조</p> <p>○ 「전기공사업법」 제27조</p> <p>○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p> <p>○ 「전기공사업법」 제2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p> <p>○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p> <p>○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대기정책과</p>	<p>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p> <p>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p>	<p>○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p> <p>○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p> <p>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사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p> <p>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p> <p>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p> <p>사. 청 문</p>	<p>○「대기환경보전법」제43조</p> <p>○「대기환경보전법」제44조</p> <p>○「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제4항</p> <p>○「대기환경보전법」제82조</p> <p>○「대기환경보전법」제85조</p>	
	<p>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p> <p>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p> <p>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p> <p>다. 등록취소시 청문</p> <p>라. 과태료 부과</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p> <p>○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p> <p>○ 환경시험검사법 제29조</p> <p>○ 환경시험검사법 제35조</p>	구청장
	<p>3.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무</p> <p>가.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p> <p>나. 시공감리자의 지정</p> <p>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p> <p>라. 등록취소시 청문</p> <p>마. 과태료 부과</p>	<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5호까지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5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30조</p> <p>○ 환경기술산업법 제37조</p>	구청장
	<p>4.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대기환경보전법」제61조</p> <p>○「대기환경보전법」제70조, 제70조의2</p> <p>○「대기환경보전법」제94조</p>	구청장
	<p>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p> <p>○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p>	
자원순환과	<p>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p> <p>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 처리 금지 명령</p> <p>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p> <p>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p> <p>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p> <p>마.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p> <p>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p> <p>다. 과징금의 처분 등</p> <p>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중지 명령 등</p> <p>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 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p> <p>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p> <p>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p> <p>아. 청문의 실시</p> <p>자. 과태료 부과·징수</p> <p>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p> <p>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p>	<p>○ 「폐기물관리법」 제46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7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9조</p> <p>○ 「폐기물관리법」 제48조</p> <p>○ 「폐기물관리법」 제68조</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4호까지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p> <p>○ 건설폐기물법 제23조</p> <p>○ 건설폐기물법 제26조</p> <p>○ 건설폐기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p> <p>○ 건설폐기물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p> <p>○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p> <p>○ 건설폐기물법 제31조</p> <p>○ 건설폐기물법 제57조</p> <p>○ 건설폐기물법 제66조</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p> <p>○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p> <p>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p> <p>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p> <p>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p>		
생활환경과	<p>1. 소음·진동규제의 별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p> <p>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p> <p>가. 허가 및 변경허가</p> <p>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p> <p>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p> <p>라. 보고·검사 등</p> <p>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p>3.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p> <p>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p> <p>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p>	<p>○「소음·진동관리법」제60조</p> <p>○「폐기물관리법」 제25조</p> <p>○「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p> <p>○「폐기물관리법」 제37조</p> <p>○「폐기물관리법」 제39조</p> <p>○「폐기물관리법」 제33조</p> <p>○「폐기물관리법」 제68조</p> <p>○「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p> <p>○「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p> <p>○「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한강사업본부장,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p> <p>구청장</p>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p> <p>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p> <p>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p> <p>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p>	<p>이라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p> <p>○ 전통사찰법 제9조 제9조의2,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13조</p>	구청장
문화예술과	<p>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p> <p>나. 폐업 및 직권 말소</p> <p>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p> <p>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p> <p>마. 영업의 승계신고</p> <p>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p> <p>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p> <p>아. 직권취소</p> <p>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차. 청문의 실시</p> <p>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p> <p>○ 정기간행물법 제17조</p> <p>○ 정기간행물법 제18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1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2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3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4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5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6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7조</p> <p>○ 정기간행물법 제33조</p>	구청장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정책과	<p>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나. 대중골프장의 병설</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목까지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p> <p>○ 체육시설법 제14조</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p> <p>나. 보고와 검사 등</p> <p>다. 폐기명령 등</p> <p>라. 검사명령</p> <p>마. 개수명령</p> <p>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p> <p>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p> <p>아. 과태료의 부과·징수</p> <p>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p> <p>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p> <p>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p> <p>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p> <p>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p> <p>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p> <p>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p> <p>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p> <p>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p> <p>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p> <p>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p>	<p>○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p> <p>○ 「약사법」 제69조</p> <p>○ 「약사법」 제71조</p> <p>○ 「약사법」 제73조</p> <p>○ 「약사법」 제74조</p> <p>○ 「약사법」 제76조의2</p> <p>○ 「약사법」 제81조</p> <p>○ 「약사법」 제98조</p> <p>○ 「의료법」 제48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p> <p>○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p> <p>○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p> <p>○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p> <p>○ 「의료법」 제51조</p> <p>○ 「의료법」 제49조제3항, 「의료법</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p> <p>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p> <p>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p> <p>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p> <p>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p>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p>	구청장
스마트건강과	<p>1.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p>	<p>○「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p>	구청장
식품정책과	<p>1.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허 가</p> <p>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p> <p>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p> <p>라. 허가의 취소</p> <p>마. 과징금 처분</p> <p>바. 감독</p> <p>(1)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p> <p>(2) 압류·폐기 또는 회수</p> <p>2.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p> <p>3.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p>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p>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p>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p>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9조</p>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p>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p> <p>○「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p> <p>○「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p> <p>○「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또는 조사 4. 염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등	법률 제7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6조, 제57조	구청장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p>1.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해당기관(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2.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3.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p>	<p>당해 보조기관의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p>

□ 안전총괄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건설혁신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다. 등록의 갱정 라. 등록의 말소 등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사. 등록증의 재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구청장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구청장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청장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나. 검사의 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 제36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81조	구청장 구청장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로법」 제61조 ○ 「도로법」 제66조 ○ 「도로법」 제72조 ○ 「도로법」 제117조	구청장

□ 주택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2.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 「주택법」 제15조, 제16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주택법」제43조, 제44조	구청장
공공주택과	1.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와 토지관리	○「택지개발촉진법」제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구청장
공동주택지원과	1.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공동주택관리법」제69조제1항	구청장
	2.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법」제94조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검 사 나.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5항	구청장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라. 보고 및 검사 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건축사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 ○「건축사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건축사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구청장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및 제96조	구청장
	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가. 연수교육 실시 나.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8조제4항	구청장

□ 균형발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정비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도로법」제31조	구청장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도로법」제31조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도로법」제31조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 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6호까지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6조 ○ 공원녹지법 제38조 ○ 공원녹지법 제41조, 제43조	구청장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법 제12조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p> <p>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p>	<p>○ 공원녹지법 제13조</p>	구청장
자연생태과	<p>1. 방제명령 등</p> <p>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p> <p>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p> <p>나. 지정서 교부</p> <p>다. 지정 취소</p>	<p>○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항</p> <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p> <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제2항</p> <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p> <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동물보호과	<p>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p> <p>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 록</p> <p>나. 시설변경</p> <p>다. 등록증 재발급</p> <p>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p> <p>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바. 업무감독</p> <p>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p> <p>아. 승계신고</p> <p>자. 폐기 등의 조치</p> <p>차. 청문</p>	<p>○ 「축산법」 제12조</p> <p>○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p> <p>○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p> <p>○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p> <p>○ 「사료관리법」 제25조</p> <p>○ 「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36조</p> <p>○ 「사료관리법」 제27조</p> <p>○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p> <p>○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p> <p>○ 「사료관리법」 제24조</p> <p>○ 「사료관리법」 제30조</p>	<p>구청장</p> <p>구청장</p>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치수안전과	<p>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p> <p>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p> <p>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p> <p>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p> <p>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p> <p>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p> <p>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p> <p>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차.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p> <p>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p> <p>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p> <p>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p> <p>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p> <p>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며.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 「하천법」 제5조</p> <p>○ 「하천법」 제15조</p> <p>○ 「하천법」 제14조</p> <p>○ 「하천법」 제52조</p> <p>○ 「하천법」 제30조</p> <p>○ 「하천법」 제30조</p> <p>○ 「하천법」 제33조</p> <p>○ 「하천법」 제36조</p> <p>○ 「하천법」 제38조</p> <p>○ 「하천법」 제68조</p> <p>○ 「하천법」 제69조</p> <p>○ 「하천법」 제70조</p> <p>○ 「하천법」 제72조</p> <p>○ 「하천법」 제90조</p> <p>○ 「하천법」 제47조</p> <p>○ 「하천법」 제48조</p> <p>○ 「하천법」 제76조</p> <p>○ 「하천법」 제77조</p> <p>○ 「하천법」 제78조</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예방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나.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32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소방서장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지위승계 신고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 소방시설법 제31조 ○ 소방시설법 제32조 ○ 소방시설법 제35조, 제49조 ○ 소방시설법 제36조	소방서장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소방서장
	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 사업으로 한정함)	규칙 제25조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규칙 제40조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택시 정책과	2.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바. (생략)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아.~파. (생략)	(생략) ○「자동차관리법」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생략)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택시 정책과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법」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관광체육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체육 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자. (생략)	(생략)	구청장

□ 관광체육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체육 정책과	(현행과 같음) 가.~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보건 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보건 의료정책과	(현행과 같음)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5항	
	다. 지도와 명령	○ 「의료법」 제59조제1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의료정책과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마약류관리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마약류관리법 제8조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 마약류관리법 제10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 마약류관리법 제12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마약류관리법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 마약류관리법 제27조 제29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	○ 마약류관리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42조, 제43조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의료정책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가. 출입·검사와 수거	(현행과 같음)	
	나.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현행과 같음)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물재생 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30조	물재생센터 소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물재생 시설과	1.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현행과 같음)	○「하수도법」제26조	(현행과 같음)

□ 소방재난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예방과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법 제31조	
	다. 지위승계 신고	○ 소방시설법 제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 소방시설법 제34조 제44조	
	마. 과징금 처분	○ 소방시설법 제35조	

□ 소방재난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예방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소방시설법 제35조 제49조	
	마. (현행과 같음)	○ 소방시설법 제36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강희주 주무관 (☎ 2133-6744)